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2. 16(목) 10:00

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 소관)

행 정 재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98호

나. 제 출 자 : 도병두 의원, 이인식 의원

다. 제출일자 : 2023. 2. 6.

라. 회부일자 : 2023. 2. 6.

2. 제안이유

최근 많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의 발생이 급증하여 지역사회와 구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종합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지역사회, 종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및 제6조)

마.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안 제7조)

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4.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5. 검토의견

1 제정 배경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던 중,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26 제정되어 2022. 1.27 시행되었음.

○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의무부과, 처벌 및 양벌규정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 규정이 미비해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해,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 주요 사항별 내용

○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을 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음.

○ 안 제6조에서는 민관협력기구 구성에 대한 내용과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대상을 규정해 사전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종합의견

○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 및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에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1 **관계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참고자료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의무사항〕

○ **중대산업재해**

구 분		의 무 사 항(시행령)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중대시민재해

구 분		의 무 사 항(시행령)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
		▸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마련,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비용 관한 기준 마련 및 1회 이상 이행점검
2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및 이행여부 연 1회 이상 이행점검·보고·필요조치
		▸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우리 구 현황〕

○ **산업재해 대상 : 총 2,175명**(조사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종사자 등(비공무원 포함)〕

○ **우리 구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총 37건**(최근 3년)

- 산업재해 유형

유형 / 계	넘어짐 미끄러짐	찔림,베임	떨어짐	부딪힘	화상	끼임	질병
37	20	8	3	2	2	1	1

※ 주요원인 : 작업자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재해발생 비중이 높음

○ **우리 구 중대시민재해시설**(공중이용시설) **현황 : 총 26개소**

- 건축물 : 20개소(문화체육과, 어르신장애인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가족정책과)
- 토목시설 : 6개소(도로과, 치수과)

※ 공중교통수단 및 원료·제조물은 해당 없음.